

# 다문화사회에서의 형사사법절차상 A.I. 사법통역지원 시스템 활용 확산 가능성에 대하여

이 지 나\*

## 목차

- 
- |                                   |                              |
|-----------------------------------|------------------------------|
| I. 들어가며 - 다문화 사회에서의<br>형사사법절차와 통역 | III. 미국의 사법 통역 현황            |
| II. 국내 형사사법 절차상 사법 통역<br>의 쟁점들    | IV. 나가며 - 인공지능 통역 및 활용<br>방안 |
- 

## Ⅰ 국문초록 Ⅰ

본고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사회적 약자가 행사해야 할 기본권 및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며, 형사사법 및 행정절차(行刑節次)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언어통역 문제와 관련하여 법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적 소수자(minority)가 겪을 수 있는 사법 절차 중의 언어 통역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통역 활용 및 해당 활용 범위 확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활성화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함과 동시

---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논문접수일 : 2023. 8. 8., 심사개시일 : 2023. 8. 8., 게재확정일 : 2023. 8. 18.

에 기본 배경 정보 검토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법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및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으로써 각국의 언어, 문화, 등의 정보를 담은 셀프러닝(Self-Learning) 알고리즘이 사법절차에서 현실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 가능한 선에서 고려하여,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으로써 관련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의 사례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역가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잠재적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로 해설을 덧붙이며 통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법관에게 알리는 것이 통역가들의 권한 내지 역할에 포함되는지와 같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 내지 프로토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법절차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및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통역 지원 강화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해 법적 대응에 취약하게 될 수 있는 이주민 출신의 피고인을 대신해 문화 차이를 바탕으로 미묘한 언어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화 중재자’로서 활약하게 될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 통역, 이주민, 소수인종, 기본권, 법정 언어와 문화

## I. 들어가며 -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법절차와 통역

21세기 들어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며, 형사 사건에 외국인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으로서 등

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up>1)</sup> 범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발생은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상해 순이며, 2018년에는 범죄자 수가 약 34,830명이었다.<sup>2)</sup> ‘다문화 사회’는 다수의 문화가 통합되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이는 동일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의 개념과 대비된다. 국제적인 인적 교류 및 자원 교류 등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는 인종 간의 공존 기회가 확대되고 상호 접촉의 빈도는 높아지게 되며, 한국 사회 또한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후 현재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외국인(특히 이민자)은 모든 절차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인은 언어 및 문화 등의 요소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형사사법 절차 수행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이 쉽게 나타나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술과 행동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문화적 특성 및 언어적 차이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간과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참고한다면, 정교한 통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외국인은 전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소통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 구사가 곤란한 자의 경우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

1) 이정민, 후쿠바 히카루,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2호, 2020, 173면.

2) 위의 논문 173면 (각5).

다는 것은 곧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방어권 및 피고인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삼호 주얼리호 사건’의 납치범들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는 이와 관련한 대표 사례이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명 소수 언어라 할 수 있는 소말리아어<sup>3)</sup>에 대한 통역이 문제가 되어 ‘한국어-영어-소말리어’ 형식의 다중 통역 형태가 실시된 바 있다.<sup>4)</sup>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같은 주요 외국어와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 내에서의 구사자 수가 적은 외국어의 경우 능통한 구사자를 국내에서 섭외하기 곤란하며,<sup>5)</sup> 의뢰에 성공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수사 자료와 함께 긴박하고 세밀하게 작동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률상의 뉘앙스를 온전히 반영하면서 통역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어 구사가 곤란한 외국인들에게 사법적 접근권을 한국어 능통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상당한 조력이 한국어 능통자에 대한 수준 이상으로 필요함은 물론이며,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적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특히 이민자)이 행사해야 할 기본권 및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정 언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行刑節次)에서 이민자들이

3) ‘소말리어’가 공식 명칭이나, 사건 당시 다수 언론에서는 소말리아어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해적들이 소말리아인이었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4) 이정민, 앞의 논문, 172-73면 (각4).

5) 충분한 통역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사 가능한 타언어가 존재한다면 이를 대상으로 하여 한 단계의 통역만으로 의사소통 가능하며, 해당 사건에서도 해적 중 한 명이 아랍어 구사자였던 관계로 한국어-아랍어 통역을 병행한 바도 있다. (윤희각, 이원주, “[생포해적 5명 압송] 소말리아어-영어-한국어 3단계 통역”, 동아일보, 2011.01.31., A4면.)

경험하고 있는 차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 가능한 선에서 고려하여,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으로써 관련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각국 사례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적 소수자(minority)가 겪을 수 있는 사법 절차 중<sup>6)</sup>의 언어 통역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통역 활용 및 해당 활용 범위 확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활성화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함과 동시에 기본 배경 정보 검토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법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및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으로써 각국의 언어, 문화, 등의 정보를 담은 셀프러닝(Self-Learning) 알고리즘이 사법절차에서 현실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함이다.

물론, 오류 가능성 최소화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이상 인공지능 통역인을 온전하게 의존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보완책의 마련 또한 필연적이다. 이에 대한 선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사법 접근성 관련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언어 및 문화 관련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6) 체포 및 구속,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법원에서의 공판 (특히 수사 절차에서의 유도 신문, 위압적 추궁 등에 취약해지기 쉽다)

## Ⅱ. 국내 형사사법 절차상 사법 통역의 쟁점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형소법 제200조의5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할 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를 알림과 동시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85조 제1항과 동법 제200조의6에 따르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형소법과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에서는 제11조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구속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형소법 제87조 제1항을 통해 변호인이나 변호인 선임권자(동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임권자) 중 지정인에게 피고 사건명, 구속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미국 수정헌법에도 명시되어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sup>7)</sup>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한 조항이며 동법 제5조<sup>8)</sup>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적법절차, 등을 규정

7) 수정헌법 제4조: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고 동법 제6조<sup>9)</sup>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피고인의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영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체포자의 신분 및 소속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체포 이유와 범죄사실은 고지되는 편이나,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소환되는 이유와 법적으로 자신이 현재 처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며, 해당 출석 행위의 후속 절차로써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긴급 체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sup>10)</sup> 경찰 내부에서도 외국인 통역 관련 지침이나 관리규칙이 없는 까닭에 원활한 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외국인 통역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sup>11)</sup>

상술하였듯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장애는 형사사법 절차 각 단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8) 수정헌법 제5조: 어느 누구도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9) 수정헌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법이 사전에 정한 구역의 공정한 배심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소의 이유와 성질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가 있으며, ...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0) 참고로, 미국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형태로 피의자 권리가 경찰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한 바 있다. See Correll, J.,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The police officer's dilemma: Using ethnicity to disambiguate potentially threatening individuals*. 8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14 (2020) at 1327.
- 11) 김한균,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피의자 권리 보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66면(각66).

오역 및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행위는 언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국가의 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이고도 정교한 이해가 함축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이거나 불충분할 시에는 발화(utterance)<sup>12)</sup>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통역 사들은 언어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통역하게 될 수도 있다.<sup>13)</sup> 서로 다른 담화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 예시로 긍정 및 부정을 표하는 방식을 언급할 수 있는데, 종결 서술어의 긍정 여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와 달리 영미권 언어문화에서는 질문의 긍정 및 부정 의도와 상관없이 응답 자체가 긍정의 의도일 경우 무조건 ‘Yes’라고 답하며 부정의 경우 일관되게 ‘No’라고 답해야 한다.<sup>14)</sup>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한인 이민자 형사소송 사건인 ‘Koh v. Vill. of Northbrook’에서는 “Didn’t you kill your son?”이라는 경찰의 질문을 피고인이 ‘네 아들을 살해하지 아니하였는가’로 이해한 결과 “Yes”라고 답변함으로써 본인이 범하지 않은 행위를 본인의 범행으로 인정하게 되어버린 대표 사례가 존재한다.<sup>15)</sup>

우리나라 형소법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포함된 제180조(통역)에서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12) 발화(utterance)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억양, 어감, 어조, 자세,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뜻한다.

13) de Jongh, E. M., *Cultural proficienc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urt interpreting* 7 Confluencia: Revista Hispanica de Cultura y Literatura 99 (1991) at 101.

14) de Jongh, E. M., *Cultural proficienc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urt interpreting* 7 Confluencia: Revista Hispanica de Cultura y Literatura 99 (1991) at 102.

15) Koh v. Vill. of Northbrook, No. 11 C 02605 (N.D. Ill. Nov. 12, 2020)



통역하게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적(sociolinguistics),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차이에 대한 해석 및 대응과 관련된 윤리강령이나 관련 통역사 지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호주에서도, 난민심사심판원 / 이민심사심판원의 통역사 핸드북(Migration / Refugee Review Refugee, 2011)에 ‘신청인에게 잠재적인 문화적 오해에 대하여 묻고 확인하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sup>16)</sup>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관련 가이드라인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통역가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잠재적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로 해설을 덧붙이며 통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법관에게 알리는 것이 통역가들의 권한 내지 역할에 포함되는지와 같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 내지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어 구사가 거의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인해 내용을 불문하고 경찰과의 대화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체포 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 동행이 필수가 아닌 상황이기에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절차법적 고지 의무 실행의 보장은 요원하다. 다만, 통역이 아닌 번역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우리나라 형소법 제182조(번역)에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이 아닌 규칙 차원에서도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예규(재일 2004-5)’ 제7조 제1항에는 ‘선정 방법’이, 동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는 ‘결격사유’, 동 규칙 제7조의4 제1항에는 ‘통역·번역인의 취소’기준이 명시되어있다.<sup>17)</sup>

16) Hale, Sandra, *Interpreting culture. Dealing with cross-cultural issues in court interpreting* 22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321 (2014) at 325.

다만, 상기 기준에 따라 전문통역인 선정이 완료되어 해당인이 외국인 피고인과 동행하더라도,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역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공인 차원에서의 법률 통역사 인증 제도<sup>18)</sup>나 적절한 공적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사사법 절차에서 통역인의 자질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sup>19)</sup> 또한, 통역사를 모집하기 위한 일련의 통역 기술 평가가 부재하기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이 피고인 또는 증인일 경우에는 진술 통역상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하였으나 통역사가 오역하여 외국인 피고인이 해당 질문을 들은 후 도리어 통역인에게 재확인하는 과정(Repair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sup>20)</sup> 재판에서 전문통역인이 통사적 및 문법적 오류를 일으키면서 원래의 발화(utterance)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여 의도한 의미와 다른 답변으로써 왜곡 통역하였던 것이며, 전문통역인이 원진술에 포함된 정보를 추가, 생략, 왜곡하여 통역을 진행하였기에 외국인 피고인은 반복적 질문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재차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sup>21)</sup>

---

17) 이정민, 앞의 논문, 175면.

18) ‘사법통역사’라는 명칭의 민간 자격증은 존재한다. (한국자격교육협회 주관, 자격등록번호 2016-005792)

19) Lee, Jieun, *Due Process and Legal Interpreting: Communicating Suspects’ Rights to Silence and Counsel across Languages* 7 T&I Review 75 (2017) at 76.

20) Lee, Jieun, and Hong, Seoyeon, *Help me to help you to help me: a conversation analytic study of other-initiated repairs in a case of Korean-Russian interpreter-mediated investigative interviews in South Korea* 29 Perspectives 522 (2021) at 523.

21) Lee, Jieun, *supra* note 19, at 81-83.

검 사: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f you waive your right to remain silent and make a statement, it may be used as evidence against you in the court of law.)<sup>22)</sup>

통역인: Today your word, your reply, all of these afterwards, after that in court, this... proof, proof...showing. Do you understand?

피고인: I don't understand.<sup>23)</sup>

통역인: You don't understand, right? Today you... today your word, to answer, right? Today we write everything down. This is why we have this disk. This disk is the proof. After that in court, in court it is possible they... cour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proof, a proof, a proof. Do you understand? Yes?

피고인: Yes.

통역인: 이해하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통역에 온전히 의존하게 되는 법관과 관계자들이 부정확한 통역의 임의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sup>24)</sup>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활용되는 (전문통역인의) 통역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어학전공, 해외 경험, 통역 경험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역역량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25)</sup>

22) 정상적으로 통역하였다면 도출되었을 내용

23) Lee, Jieun, *supra* note 19, at 81-82.

24) Lee, Jieun, and Hong, *supra* note 20, at 535.

법정 통역에서는 적절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죄수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미란다 원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sup>26)</sup> 이어지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권에 관한 통역조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도 한다.<sup>27)</sup>

검 사: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 You can give up your testimony.

검 사: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통역인: If you refuse, it's possible.

Krouglov의 연구에 의하면, 통역사들은 종종 구어체로 간소화한 채 의미를 전달하거나 실질적인 내용의 의미를 변형하며 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불명확하게 하며 때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up>28)</sup> 통역사가 증인의 답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변형시켜 사건의 결과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스페인어-영어 법정 통역 사례도 존재한다.<sup>29)</sup> 호주 법원에서의 한국어 통역에 기초한 자료 분석

---

25) Lee, Jieun, *supra* note 19, at 78.

26) Lee, Jieun, *supra* note 19, at 78.

27) *Id.* at 83-84.

28) See generally, Krouglov, A., *Police interpreting: Politeness and sociocultural context* 5 The Translator 285 (1999).

29) See generally, Hale, Sandra, *How faithfully do court interpreters render the style of non-English speaking witnesses' testimonies? A data-based study of Spanish-English bilingual proceedings* 4 Discourse Studies 25 (2002); Also see Kahn, K. B., & Davies,

에 따르면, 법원 통역사들이 해석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복잡한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문화적 해석을 억제함으로써 법원 절차 및 피고인의 기본권 행사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이 나타났다.<sup>30)</sup>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역 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역 전문가와 법조인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통역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순 통역과 관련된 연구를 초월한 심리언어학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외국인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안정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습득의 경우 기존에 가장 잘 구사하고 있던 모국어와 새로이 습득하게 된 제2외국어의 정보를 각각 다르게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및 문화적인 어려움을 가중하게 되는데, 특히 법률용어와 같이 복잡한 전문지식을 다수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높은 확률로 본래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그 정확도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원 통역사는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 법조인은 46%(103명)가 동의하였으나 법원 통역사는 28%(10명)가 동의하였다. 또한, 법조인 집단 내에서도 판사가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견해를 더 지지하고 이를 기대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

P. G., *What influences shooter bias? The effects of suspect race, neighborhood, and clothing on decisions to shoot* 73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2017).

30) Jieun Lee, *When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disclosed in court interpreting* 28 *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379 (2009) at 383.

31) Eades, D. & Pavlenko, A., *Translating Research into Policy* 3 *Language and Law* 45 (2016) at 47-48.

공판단계 중 외국인들은 전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나 법률용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극도로 불안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기본적 의사소통의 곤란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의 고압적 행동으로 인해 진술을 강요받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를 통해 ‘피고인을 신문함에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써 억압적인 수사가 지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을 통해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는 내용으로써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조력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 형소법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접견교통권을 명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차원에서 볼 때, 취약 계층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국선변호 제도의 현실적 한계의 영향을 받아 사안에 따라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현실적 수입 대가와 과도한 업무량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의자의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재판 과정에 임하게 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준비는 형식적 태도를 촉발하거나 피의자 진술 및 진술 내 함축 의도 이해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면이 발현된다면, 결과적으로는

32) See generally, Jieun Lee,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court interpreters* 11 *Interpreting* 35 (2009)

유효한 조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종과 관련한 이슈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형사 처분의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특정 고정 관념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보석개혁법(The Federal Bail Reform Act)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사가 지역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낄 때 보석 거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대개 외국 출신 이민자들의 신분 상태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인종적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차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sup>33)</sup> 이러한 양상은 일부 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는 데, ProPublica<sup>34)</sup>는 COMPAS<sup>35)</sup>가 ‘백인 피고인보다 유색 인종의 피고인이 재구속될 위험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부정확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백인 피고인이 유색 인종의 피고인보다 ‘낮은 위험’(low-risk)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며, 유사하게 체포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유색 인종이 백인 피고인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sup>36)</sup> 이와 같은 인종, 문화, 언어로 인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기본권 박탈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서 취약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이민자 등을

---

33) Schlesinger, T., *Racial and ethnic disparity in pretrial criminal processing* 22 Justice Quarterly 170 (2005) at 4.

34) ProPublica는 비영리 인터넷 언론이며, 현재는 탐사 저널리즘의 대명사로 인지되고 있다.

35)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 인공지능 재범 예측 도구.

36) Eckhouse, L., Lum, K., Conti-Cook, C., & Ciccolini, J., *Layers of Bias: A Unified Approach for Understanding Problems With Risk Assessment* 46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5 (2019) at 190.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을 발견하고 강조할 수 있다.

### Ⅲ. 미국의 형사사법 통역 현황

#### 1. 사법 접근권 향상을 위한 미국의 제도와 정책

미국 인구 조사는 2044년 이전에 인구 통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인종적 소수자(minority)는 다수자(majority)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37)</sup>

1964년에 만들어진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인종, 피부색, 또는 국가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이었으며, 2000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13166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제한적인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LEP)”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주문하였다. 이는 Title VI<sup>38)</sup>에 규정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LEP를 가진 이들에게 의미 있는 법적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사하고, LEP 개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LEP 개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

37) Cruz, Sherley, *Coding for Cultural Competency: Expanding Access to Justice with Technology* 86 Tennessee L. Rev 348 (2019) at 373.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15/demo/p25-1143.pdf>.

38)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이에 따라, 연방 자금을 받는 21개 주 법원에서는 LEP 개인에게 통역사를 제공해야 했으며, 이후 1978년 카터 대통령은 ‘법원 통역 사법’(Court Interpreters Act)에 서명함으로써 법원 절차에 관련된 언어 장벽이나 기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자격을 갖춘 법원 통역사를 통하여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이르렀다.<sup>39)</sup>

상술하였듯이, 단순한 언어를 뛰어넘은 ‘문화적 유창성’(cultural fluency)은 사법 체계와 접촉하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언어에 대한 권리 또한 일종의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그것을 언어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번역하는 언어의 뉘앙스를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언어 자체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40)</sup> 미국 뉴욕시에 거주 중인 약 850만 명의 인구 중 약 절반은 집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5세 이상의 뉴욕 거주민 중 약 4분의 1은 ‘제한된 영어숙련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이며, 뉴욕주(州)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74%의 변호사들이 통역관 부재로 인한 법정 휴정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sup>41)</sup> 또한, 언어적 및 문화적 해석의 오류로 인해 통역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검증하여 정정 또는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통역의 오류로

39) Wahler, Madison Elizabeth, *A Word is worth a thousand words: Legal Implications of Relying on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y* 48 Stetson L. Rev. 109 (2018) at 114.

40) de Jongh, E. M., *Cultural proficienc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urt interpreting* 7 Confluencia: Revista Hispanica de Cultura y Literatura 99 (1991) at 100.

41) 뉴욕주 통역 공평성 보장 관련 보고서

<https://www.legalservicesnyc.org/storage/PDFs/ij%20report%20summary%20korean.pdf>

인해 잘못 전달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정의 실현 과정에서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영어가 미숙하고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민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절차 접근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州)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며 외국인 출생자(27%)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인구(18.8%)의 분포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2)</sup> 이러한 언어 관련 문제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법 접근성에 중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州)법원은 이를 극복하고자 ‘캘리포니아 언어 접근성 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하여 ‘3단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노력을 이어왔다.<sup>43)</sup> 해당 계획의 기반이 된 내용은 텍사스주(州) 휴스턴에서 개최된 ‘법정 언어 접근에 관한 미국 전역 회담(National Summit on Language Access in the Courts)’에서 제시된 로드맵이다.<sup>44)</sup> 총 49개 주(州) 약 300명의 사법부 관계인들이 참석했던 해당 회담에서는 영어 미숙자들의 사법 접근 보장을 위한 9단계 로드맵을 언어 지원 수요 파악, 프로그램 관리조직 설립 및 유지, 분석 절차 시행, 법원 구성원 및 관계인 교육 및 연수, 통역인 인증 및 교육, 원격 통역 기술 활용, 기금 조성을 위한 전략 개발 등으로써 제시하였다.<sup>45)</sup>

42) 홍진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요약본)”, 사법정책 연구원, 2018, 8면.

43) Language Access Plan Implementation Task Force (LAPITF) 2018년 1월 1일 발표.

44) NCSC Racial Justice

<https://www.ncsc.org/consulting-and-research/areas-of-expertise/racial-justice/racialjusticeassessment>

정확한 해석과 통역을 위해서는 대상 언어와 연결되는 문화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언어 변환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의 특징이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발현되는 과정 및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이미 학습된 반응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도 형사사법 절차 전반적 차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멕시코계 피고인이 바닥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죄책감으로부터 발현된 결과가 아니라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판사에 대한 존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sup>46)</sup>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스페인어 콘텐츠 중심의 웹사이트 커뮤니티 및 가족 관련 이미지를 선호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2015년 Google社의 실험 결과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문화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존재가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실제로 라틴계 사람들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형사사법 절차상 언어 장벽으로 인해 문화적인 고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히스패닉 사례에서와 같은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오히려 개인주의적 문화에서의 법원에서는 곡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 2. 인공지능 통역 도입의 유용성과 시사점

인공지능 통역을 형사사법 절차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

45) 홍진표, 앞의 논문, 8면.

46) de Jongh, E. M., *supra* note 40, at 103.

47) Cruz, Sherley, *supra* note 37, at 382.

의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을 상기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인기 기계 번역으로 ‘Google Translate’가 존재하는데, ‘Google Translate’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번역할 수 있으며 매년 30조 개의 문장을 번역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검색 수행에 대한 동의가 ‘Google Translate’를 통해 얻어졌다는 까닭으로 법원에서 증거 기각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는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결과이다.<sup>48)</sup> 아직은 그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기존의 기계 번역에 존재하는 한계를 초월하여 인공지능 통역 기술에 이르게 되면 기술설계의 구조(mechanism)가 복잡해짐과 동시에 AI 데이터, 코딩, 소프트웨어 초안 기술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아 입체적인 결과 축적으로써 무수히 다양한 변수로의 대응도 기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특정 국가의 언어 및 문화적 요소가 데이터화 되고 이러한 정보가 빅데이터 형태로 누적되며 학습되면 셀프러닝(Self-Learning) 과정을 거쳐 일종의 정보 신뢰성 강화를 통해 더욱 정확한 해석과 통역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며 법정 내의 통역에서도 효율성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통역인, 법조인, 인공지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형성하여 재판 내 통역 결과물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를 선별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의 특성을 정교히 반영하는 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적인 면과 관련된 비언어적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설계 원칙을 전제 차원에서 확장하여

---

48) Vieira, Lucas Nunes, et al., *Understanding the societal impacts of machine transl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medical and legal use cases*, 24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15 (2021) at 1516.

설정한다면, 해당 기술의 혁신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통역 과정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진술 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으로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언어적 요소의 완전한 전달과 비언어적 요소의 정확한 반영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만큼, 시스템 자체의 발전 이외에도 이주민에 대한 오해 및 고정관념의 극복,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수사 관행,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통역인 등의 전문가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 이주민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법,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신문기법과 해석방법 등을 적시한 교육 매뉴얼의 구축은 중요 보완 방안으로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법조인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조직의 행정적 차원에서는, 외국인 전담부서의 설치가 효과적인 보완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외국인 관련 단체를 검찰, 법원 등의 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언어심리학자, 사회언어학자, 교차문화학자 등의 전문인력단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법관 및 검사로부터 배심원에 이르기까지 공판 절차 내의 관여자 전원에게 실시하게 될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역할까지 전담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외국인 관련 대응 조직으로 형성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변화무쌍한 리걸테크(Legal-Tech) 시대와 다문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시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전담부서의 상설화는 선제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준비할 가치가 충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및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통역 지원 강화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해 법적 대응에 취약하게 될 수 있는 이주민 출신의 피고인을 대신해 문화 차이를 바탕으로 미묘한 언어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화 중재자’로서 활약하게 될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방안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사법 체계에서의 인공지능 통역이 법정 언어 및 법조 문화 등의 영역까지도 섭렵함으로써 실효적 통역과 누락 없는 전달에 의한 합리적 의견 도출을 일관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 IV. 나가며 - 인공지능 통역 및 활용 방안

소송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은 디지털 사법(Digital Justice) 또는 전자사법(e-Justice)을 통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지원받는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온라인 분쟁 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절차상 활용하고 있다.<sup>49)</sup>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송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 탐색(Discovery)과 판례 검색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 자문과 관련하여서도 실사(due diligence) 및 계약서 검토 자동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sup>50)</sup> 호주 법원에서는 스플리트-업을 활용하여 이혼 시

49) 이로리, “ADR 제도 설계와 AI의 활용”, 저스티스, 제194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23, 338-339면.

50) 전정현, 김병필,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저스티스, 제170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19, 218면.

재산 분할 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sup>51)</sup> 일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법부의 지능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상의 기저에서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 고양’이라는 사법정책적 목표가 뒷받침하고 있다.<sup>52)</sup> 각국 사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 또한 이와 동일한 다층적 맥락에서 사법 접근권의 제고를 최상위 지향점으로 설정하며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sup>53)</sup>

외국인 사례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정 통역사들은 그들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내용에 대상 언어의 사회문화적 측면<sup>54)</sup>을 충분히 반영하여 억울함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정 통역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며 모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언어적 개념 및 문화적 요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을 체계적 훈련으로써 후배 통역사들에 전수하여 법정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체계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뉴저지주(州) 법원은 ‘공공 안전 평가’(Public Safety Assessment)<sup>55)</sup>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재판 전 절차를 개편한 바 있다. PSA는 개인을 석방하기 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일종의 위험 평가 도구이며, 현재 30개 관할 구역에서 활용 중이다. 해당 알고리즘은 나이, 범죄 이력 등 총 9개 요소를 적용하고 과거 데이터

---

51) 정채연, “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을 위한 기초 연구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6권,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56면.

52) 위의 논문, 69면.

53) 위의 논문, 69면.

54) Krouglov, A., *supra* note 28, at 299.

55) New Jersey Public Safety Assessment:

<https://www.nacdl.org/getattachment/50e0c53b-6641-4a79-8b49-c733def39e37/the-new-jersey-pretrial-justice-manual.pdf>

를 활용함으로써 위험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COMPAS 프로그램에서 지적되었던 자기 학습 인공지능의 잠재적 차별 요소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결과물 내의 인종, 성별, 기타 사회경제적 편견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코자 별도의 기관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것이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 A.I. 프로토콜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해당 자료가 유색인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뉴욕주(州) 법원행정처는 2006년에 통역 제도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한 이래, 정기적으로 통역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고 있다.<sup>57)</sup> 또한, 신속한 통역 수요 충족을 위하여 법원 이용자와 통역인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화상 대화 기술인 ‘화상 원격 통역’(Video Remote Interpreting, VRI) 시스템을 각 법원에 적용하고자 ‘VRI 실시계획’(VRI pilot project)<sup>58)</sup>을 수립하였다.<sup>59)</sup>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통역인 시범운영을 가능케 한다. ‘정규직<sup>60)</sup>으로 전문통역인을 고용한 상황에서 해당 통역인의 보조 역할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 ‘제1단계’라면, ‘제2단계’에서는 ‘통역인이 통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며, 제1단계와 제2단계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경우 ‘제3단계’에서는 ‘안전하게 독립된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을 기대

56) Cruz, Sherley, *supra* note 37, at 400.

57) COURT INTERPRETING IN NEW YORK: A PLAN OF ACTION  
[https://ww2.nycourt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iles/2018-05/action\\_plan\\_040506.pdf](https://ww2.nycourt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iles/2018-05/action_plan_040506.pdf)

58) <https://www.courts.ca.gov/27697.htm>; 플로리다 주 Virtual Remote Interpreting도 참조  
<https://www.flcourts.gov/Resources-Services/Court-Services/Court-Interpreting/Virtual-Remote-Interpreting>

59) 홍진표, 앞의 논문, 8면.

60) Full-Time 및 Part-Time 무관



해볼 수 있게 된다.

2016년 말, 향상된 번역 소프트웨어인 Google은 ‘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GNMT)를 출시하였는데, GNMT 시스템은 ‘딥 머신 러닝’(Deep Machine Learning)<sup>61)</sup>을 사용하여 언어와 관련한 인간 두뇌의 기능을 시뮬레이트(simulate) 하며 인간 두뇌의 기능 도구 부분이 GNMT의 기반이 되어 운용된다.<sup>62)</sup>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법절차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권 증진 도모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통역 기술의 활용 중 적용될 윤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역인 및 언어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의 정기적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상으로도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제도적 장치의 틀 내에서 적극 수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자세야말로 일명 ‘4차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덕목이며,<sup>63)</sup> 이러한 보완적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암묵적 차별의 간극은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비로소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사법 영역이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인 ‘정의’라는 면과 형사사법 절차의 궁극적 목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사법 영역에서 언어적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외국어 병기’ 등과 같이 상호작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61) 기술적으로는 Machine Learning이 Deep Learning의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다.

62) Wahler, Madison Elizabeth, *supra* note 39, at 121.

63) 양종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영남법학 제 44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2면.

에 없으며, 원활한 통역 지원을 목적으로 관련 직원 고용 확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용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 즉,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특히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풍부한 서비스가 시의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효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충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명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법학계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리걸 패러다임’(Legal Paradigm)<sup>64)</sup>의 현실화를 이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면적인 혁신을 일시에 완벽히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첨단기술 도입활용은, 적법절차 실현을 위한 법적 규정 및 인적 역량이 갖추어지고 관련 기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실무 활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만 그 필요성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64) 한상훈, “패러다임과 법의 변화 -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저스티스, 제158권, 한국법학원, 2017, 240-265면 참조.

65) 김한균,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피의자 권리 보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66면.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한균,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피의자 권리보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47-174면.
- 박형민 외 2인,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 양종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영남 법학」 제44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29면.
- 이로리, “ADR 제도 설계와 AI의 활용”, 「저스티스」 제194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23, 337-366면.
- 이유진,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제18권, 한국통역번역학회, 2016, 111-136면.
- 이재협, “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1-171면.
- 이정민·후쿠바 히카루,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2호, 2020, 171-202면.
- 전정현·김병필,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저스티스」 제170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19, 218-258면.
- 정채연, “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을 위한 기초 연구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6권,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53-81면.
- 한상훈, “패러다임과 법의 변화 -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저스티스」 제158권, 한국법학원, 2017, 240-265면.
- 홍진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1-398면.

〈국외문헌〉

- Arnold, D., Dobbie, W., & Yang, C. S., Racial bias in bail decisions. 133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885 (2018).
- Correll, J.,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The police officer's dilemma: Using ethnicity to disambiguate potentially threatening individuals. 8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14 (2002).
- Correll, J.,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The influence of stereotypes on decisions to shoot 37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02 (2007).
- Cruz, Sherley, Coding for Cultural Competency: Expanding Access to Justice with Technology 86 *Tennessee L. Rev* 348 (2019)
- de Jongh, E. M., Cultural proficienc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urt interpreting 7 *Confluencia: Revista Hispanica de Cultura y Literatura* 99 (1991).
- Eades, D. & Pavlenko, A., Translating Research into Policy 3 *Language and Law* 45 (2016).
- Eckhouse, L., Lum, K., Conti-Cook, C., & Ciccolini, J., Layers of Bias: A Unified Approach for Understanding Problems With Risk Assessment 46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5 (2019).
- Hale, Sandra, Interpreting culture. Dealing with cross-cultural issues in court interpreting 22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321 (2014).
- Hale, Sandra, How faithfully do court interpreters render the style of non-English speaking witnesses' testimonies? A data-based study of Spanish-English bilingual proceedings 4 *Discourse Studies* 25 (2002).
- Kahn, K. B., & Davies, P. G., What influences shooter bias? The effects of suspect race, neighborhood, and clothing on decisions to shoot 73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2017).

- Kovera, Margaret Bull, Racial Dispar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evalence, Causes, and a Search for Solutions 75 *Journal of Social Issues* 1139 (2019)
- Krouglov, A., Police interpreting: Politeness and sociocultural context 5 *The Translator* 285 (1999).
- Lee, Jieun, and Hong, Seoyeon, Help me to help you to help me: a conversation analytic study of other-initiated repairs in a case of Korean-Russian interpreter-mediated investigative interviews in South Korea 29 *Perspectives* 522 (2021)
- \_\_\_\_\_, Due Process and Legal Interpreting: Communicating Suspects' Rights to Silence and Counsel across Languages 7 *T&I Review* 75 (2017)
- \_\_\_\_\_,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witness statement: poli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18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94 (2017)
- \_\_\_\_\_, When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disclosed in court interpreting 28 *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379 (2009)
- \_\_\_\_\_,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court interpreters 11 *Interpreting* 35 (2009)
- Schlesinger, T., Racial and ethnic disparity in pretrial criminal processing 22 *Justice Quarterly* 170 (2005).
- Vieira, Lucas Nunes, et al., Understanding the societal impacts of machine transl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medical and legal use cases, 24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15 (2021)
- Wahler, Madison Elizabeth, A Word is worth a thousand words: Legal Implications of Relying on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y 48 *Stetson L. Rev.* 109 (2018)

[관련법령 및 링크]

캘리포니아 LA County Limited English Proficiency(LEP) 계획안

[https://lascpubstorage.blob.core.windows.net/cts-webgrouppublic/LIBSVC CourtroomSupport/Language%20Access%20Services/Court%20Interpreters/LEP%20Plan/LEPPlan\\_KO.pdf](https://lascpubstorage.blob.core.windows.net/cts-webgrouppublic/LIBSVC_CourtroomSupport/Language%20Access%20Services/Court%20Interpreters/LEP%20Plan/LEPPlan_KO.pdf)

뉴욕주 통역 공정성 보장 관련 보고서

<https://www.legalservicesnyc.org/storage/PDFs/ij%20report%20summary%20korean.pdf>

미합중국 법무부 - 주 법원에서의 언어 지원 서비스

<https://www.justice.gov/file/909801/download>

<Abstract>

##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 Society with Diverse Cultures**

Gina S. R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fundamental and protective rights for those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o examine the introduction and necessity of legal AI technology in relation to language interpretation difficulties by presenting discrimination cases involving immigrants in criminal justice and execution procedures. Particularly,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AI to render judgments and broaden its application in relation to the language interpretation challenge in judicial proceedings affecting ethnic minoriti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legal-tech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and use of new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s, analyzes cases and suppor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directions to be pursued. Guidelines or protocols that reflect discussions such as whether interpreters can arbitrarily conduct interpretations and inform judges about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are discussed by the author.

At present, the sole focus of discussion in Korea pertains to the

---

\* Assistant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atholic College, J.D. Ph.D in Criminal Justice

enhancement of simple interpretation support,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defense rights for foreigners in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the author emphasize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s as ‘cultural mediators’ who understand and accurately explain subtle language expressions based on cultural differences on behalf of immigrants who may be vulnerable to legal responses due to language.

**Key Words** : AI interpretation, immigrant, racial minority, constitutional right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ourt